

비상경제본부 회의 겸
경제·대외경제장관회의
26-12-3
(공개)

주요 노동현안 대응방향

- 공공부문이 선도하는 모범적 사용자 역할 확립 -

2026. 4. 30.

관 계 부 처 합 동

순 서

I. 추진배경	1
II. 주요 현안 대응방향	2
1. 공공부문 도급·비정규직 처우개선 현장 안착	2
2. 개정 노조법에 따른 교섭질서 확립 및 노정협의 강화	5
3. 경사노위 중심 사회적 대화 활성화	6
[참고 1] 공공부문 도급 운영개선 세부 추진과제 및 일정	7
[참고 2]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세부 추진과제 및 일정 ..	8

I. 추진배경

□ “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”를 위해 노동조건 개선 및 격차 해소를 역점 추진 중<국정과제 93, 94 등>

○ 특히, 공공부문부터 모범적 사용자 역할을 강화하고 효과성을 입증하여 민간기업의 공정한 노동관행 확산 유도

□ 이를 위해 일회성 대응이 아닌 공공부문*의 고용구조, 노사관계의 근본적인 개선 추진

* 공공부문은 240만명, 임금근로자의 11%를 고용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주된 사용자

❶ 개정 노조법('26.3월)에 따라 성실교섭, 돌봄 등 취약분야는 선제적으로 노정협의체 신설·운영

❷ 공공부문 도급·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·고용안정 개선 대책 마련, 63년 만에 명칭이 복원된 노동절 前 순차적 발표(4.16. 및 4.28.)

〈대통령 말씀〉

- ('25.12.9. 국무회의) “정부가 공공부문의 모범적 사용자로서 적정임금을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.”
- ('26.3.10. 국무회의) “여러 차례 정부가 모범적인 사용자가 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음. 관련 부처가 모여 신속하게 계획하여 정부부처, 공공기관, 지방정부 등에 전파할 것”

❸ 공공부문 61만명 공무원·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정협의 틀인 공무원위원회 신설(「공무원위원회법」 '26.3.17. 공포, 6개월 뒤인 9.18. 시행)

□ 한편, 새 정부 제1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발족('26.3.19.)을 통해 AI, 청년 일자리 등 미래변화·세대·산업을 아우르는 사회적 대화에 착수

❖ '26.3월 개정 노조법 시행, 4월 도급·비정규직 노동자 처우개선 대책 발표 계기로 쏠 부처는 대책의 현장 안착 및 선도적 성과 달성, 적극적 노정협약에 각별한 노력 필요

⇒ 국민의 정부신뢰 제고, 민간부문 공정한 노동관행 확산 추진

❖ 아울러, 사회적 대화를 통한 선제적·상시적 소통·갈등관리 체계 구축

Ⅱ. 주요 현안 대응방향

1 공공부문 도급·비정규직 처우개선 현장 안착

- 대통령 지시 계기*로 정부합동 실태조사에 기반하여 불공정 도급·비정규직 고용관행 개선을 핵심으로 하는 대책 발표 → 금년 내 가이드라인 마련, 경영평가·예산 반영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

- * ▲ 공공부문 착취적 하도급 지적, 정확한 실태파악 후 개선 지시('25.7.31. 수석·보좌관회의)
- ▲ 비정규직 보수를 단계적으로 정규직 수준까지 인상, 비정규직 고용불안에 대해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하는 방안 순차적으로 도입 검토 지시('25.12.9. 국무회의)

① [도급] 「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」('26.4.16.)

- **(적정임금 보장)** 청소·경비·시설관리 등 용역 계약 시 최저 낙찰 하한율 상향 추진, 노무비는 용역계약 산출내역서상 구분·명시*
 - * 전자조달 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·상생결제 등 활용과 노무비 전용계좌 지급 확대
- **(임금격차 완화)** 정규직 전환인력 처우개선을 위해 복지 3종(급식비, 복지포인트, 명절상여금)은 총인건비 인상을 산정 시 제외
 - 저임금 공공기관 등 임금격차 단계적 완화 추진, 교대제 개편 및 복리후생시설 이용 등 발주·도급 노동자간 동일한 근로환경 조성 노력
- **(고용안정 강화)**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* 도급계약 기간은 2년 이상 보장, 근로계약 기간도 도급계약 기간과 동일하게 설정
 - * 일시적 사업, 2년 이내 사업 완료 예정인 경우(단, 전체 사업기간에 대해 근로계약 체결 必)
 - 단순노무용역·사내도급 등은 입찰단계에서 고용승계 협약서를 받고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
- **(하도급 제한)** 공공부문 하도급(2차도급) 원칙적 제한, 신기술 또는 전문성 필요, 일시·간헐적 업무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* 허용
 - * 원도급사는 하도급 사전심사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고, 발주기관에서 하도급 필요성·적정성 등을 승인하는 절차(가칭하도급 적정성 사전심사) 도입

② [비정규직] 「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」(‘26.4.28.)

1. 노동가치·고용 불안정성을 제대로 보상하는 공정한 보수 지급

- **(공정수당)**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 고용불안정성 보상을 위해 기준 금액(최저임금 118%)의 10~8.5%를 계약 만료 시 지급 (정부 예산안 반영)

〈'27년 공정수당 지급표(안)〉

근무기간	1~2개월	3~4개월	5~6개월	7~8개월	9~10개월	11~12개월
보상지급률	10%	9.5%	9%	8.5%	8.5%	8.5%
공정수당	382천원	846천원	1,260천원	1,622천원	2,055천원	2,488천원

- **(적정임금)** 기간제 노동자에게 노동가치에 상응하는 적정임금(최저임금 118%) 설정+미달 노동자에 대해 '27년 예산안에 일시반영(정부 예산안 반영)
- **(처우개선 논의)** 비정규직 노동자 등의 복지 3종(급식비, 복지포인트, 명절 상여금) 등 실태를 살펴보고 단계적 개선 논의

2. 모범적 사용자로서 공정한 고용관행 확립

- **(공정한 고용관행 확행 및 사전심사제 내실화)** 상시·지속 업무의 경우 정규직 고용원칙을 재확인하고, 1년 미만 계약 원칙적 금지
 - 불가피한 경우 채용 사전심사제*를 거쳐 예외적으로 채용하되, 실효성을 제고**하여 비정규직 남용 방지
 - *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채용 시 각 기관 내 심사를 거쳐 불가피한 사유(일시·간헐적 업무, 휴직 대체, 전문성 활용 등)에 한해 채용할 수 있도록 도입
 - ** 심사위원회 구성(現 내부위원 중심 → 외부위원 포함), 경영평가 강화
 - 상시·지속업무임에도 단기계약 반복 노동자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 정규직 전환 노력을 하도록 하여 고용안정 도모
 - * '17년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전환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관('26.4월 52개소)의 신속한 전환 결정에 대한 지도도 병행
- **(초단시간 남용 방지)** 주 15시간 미만 기간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채용 사전심사제에서 필요성이 인정*된 경우에 한해 예외적 사용
 - * (예시) 특정 요일, 시간에만 수행하는 업무로 주 15시간 미만이 명확한 경우 등

3. 처우개선의 지속성 담보

- **(정기 실태조사)** 매년 공공부문 고용·임금 현황 실태조사 추진
- **(경영평가 등)** 공공기관·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등에 관련 지표 신설·강화하고 자치단체 합동평가 등 반영 검토, 경영평가심사위원회 구성(노동부)으로 비정규직 채용·운영 적정성, 사전심사제 내실화 등 정량·정성 평가
- **(상담센터)** 비정규직 노동자가 온라인으로 상담받을 수 있도록 공공부문 불합리한 관행 상담센터 운영('26.4.6. 개소)
- **(지도·감독)** 매년 공공부문 대상 근로감독 실시, 실태점검 및 개선지도

③ [협조요청] 처우개선에 필요한 지침 및 예산안 반영 등 즉시 조치

- **(신속 추진)** 「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」('26.4.16.) 및 「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」('26.4.28.) 이행 필요사항 신속 조치
 - **(지침)** 대책 내용은 관련 정부 지침* 등에 반영 추진 및 ^{가칭}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마련·경영평가 개선
 - * 예산안편성지침(기획처),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(행안부) 등
 - **(예산)**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'27년 예산안에 구체적 내용 확정 및 반영(~'26.9월) → 이후 지속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등과 협의
- **(이행점검)** 관계부처 합동 '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TF'('25.12월~)에서 대책 이행상황 점검(소속 산하·유관기관 등 독려 필요)
 - * ▲ (공동위원장) 노동부노동정책실장·재경부공공혁신심의관
▲ (위원) 기획처·교육부·노동부·행안부·인사처 등 관계부처 국장급
- **(향후 논의)** 공무직위원회 발족('26.9월) 이후 동 위원회 중심으로 공공부문 처우개선 등 논의 지속, 추가 개선사항 발굴·추진

1 [현황] 교섭절차 진행 및 노정협의체 운영 추진

- **(교섭요구)** 전체 교섭요구(400건) 중 민간 223건, 공공 177건*(44%), 부처·지자체는 민간위탁, 공공기관은 모-자회사 관계에서 교섭 요구
 - * 중앙정부(11건), 자치단체(112건), 공공기관(46건), 지방공기업 등(8건) (’26.4.27. 기준)
- **(진행상황)** 노동위 판정, 판단지원위 자문 등 교섭양태별 사용자성 판단→ 노조법상 절차 등에 따라 안정적으로 교섭절차 진행 중
 - ① 자체 판단, 노동위 판정 등을 통해 사용자성이 인정된 기관은 교섭요구 사실 공고 등 노조법상 교섭절차 진행*
 - * 부산교통공사, 한국자산관리공사, 화성시 등 교섭요구사실공고(13개소) → 확정공고(11개소)
 - ② 주요 교섭요구 부문인 돌봄 분야는 돌봄 종사자의 실질적 처우 개선 논의를 위한 노정협의체 구성·운영(3.25~)*
 - * (돌봄 노정협의체) 복지부·성평등부·교육부·노동부 + 민주노총 총연맹 및 5개 산별노조
 - ③ 상생교섭 컨설팅 참여 공공기관(6개소*)은 교섭을 위한 의제 선별, 쟁점 검토 등 컨설팅 진행 중
 - * 한국조폐공사, 부산항만공사, 한국중부발전, 한국동서발전, 한국가스공사, 인천교통공사

2 [협조요청] 공공부문 선도적 역할

- **(교섭)** 자체 판단, 노동위 판정 등을 통해 사용자성이 확인되는 경우 노조법상 절차에 따라 신속한 교섭절차 진행
 - 사용자성 낮은 경우에도 처우개선을 위한 별도 노정협의체 운영
- **(노정협의체)** 돌봄 분야 노정협의체를 선도모델로 하여 공공부문 주요 분야에서 노정협의체 운영 확산 추진
 - 성평등부, 기후부, 문체부 등 소관부처의 적극적 참여 필요
- **(상생교섭 컨설팅)** 공공부문 모범사례화 될 수 있도록 소관 부처에서 적극적 지도 필요

① [현황] 제1기 경사노위 출범 후 개별 회의체 순차적 발족 추진

- **(사회적 대화 복원)** 새 정부 제1기 경사노위는 대통령 참석 하 '노사정이 국민과 함께하는 사회적 대화 2.0' 슬로건을 걸고 출범('26.3.19.)
- **(대화 의제)** AI 등 전환기 복합위기 대응, 노동시장 구조개선, 석유·화학 등 산업현장의 긴급한 현안 등을 폭넓게 다루는 총 11개 회의체 구성 → 5월부터 각 위원회 논의 순차적 개시 예정

구분	회의체	참여부처(잠정안)
특별(1)	①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	재경부, 노동부
	② 소규모사업장 산재예방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	중기부, 노동부
의제별 (5)	③ 청년일자리 희망위원회	재경부, 노동부
	④ 노사관계제도 발전위원회	산업부, 노동부
	④-1 직장내 괴롭힘 제도 개선 분과	성평등부, 노동부
	⑤ AI 전환에 따른 노사상생위원회	재경부, 과기부, 산업부, 중기부, 노동부
	⑥ 공무원·교원 노사관계위원회	행안부, 인사처 교육부, 노동부
업종별 (1)	⑦ 석유·화학산업 불황에 따른 지역고용·경제 지원위원회	산업부, 중기부 행안부, 노동부
연구회 (4)	⑧ K-컬처 산업 지속가능성 모색 연구회	문체부, 노동부
	⑨ 노동자 실질소득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회	재경부, 노동부
	⑩ 석탄·화력발전 산업의 공정한 전환 연구회	기후부, 노동부
	⑪ 보건의료 지속가능 정책 연구회	복지부, 노동부

* 각 회의체별 세부의제에 따라 참여부처 변동 가능

② [협조요청] 경사노위 중심 사회적 대화에 관계부처 적극 참여

◆ 정부가 사회적 대화에 솔선수범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간 신뢰자본 형성, 선제적 갈등관리 → 차질 없는 국정과제 추진 뒷받침, 정책수용도 제고 노력

- 그간 개별 부처는 이슈별 이해관계자 협의체 등 운영과정에서 투입 노력에 비해 논의의 파편화, 갈등 예방 미흡 등 한계

→ '사회적 대화 통합플랫폼'인 경사노위를 적극 활용할 필요

- 노사정을 비롯한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한 자리에서 현재의 복합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근본 해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각별한 관심, 적극적 참여 요청

참고 1**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 세부 추진과제 및 일정****1. 적정 낙찰률 보장 등으로 노동조건 개선**

① 계약 낙찰하한율 상향을 위한 관련 기준 개정	재경부·조달청	'26.5.
② 노무비 목적외 사용금지 [가이드라인]	관계부처 합동	'26.下
③ 전자조달시스템(하도급지킴이 등) 사용 대상 확대 검토	노동부·조달청 ·행안부·관계부처	'26.下

2. 불합리한 임금격차 완화

① 복지 3종 관련 예산운용지침 및 기준 명확화	재경부·행안부	'26.下
② 동일 노동환경 조성 노력 [가이드라인]	관계부처 합동	'26.下
③ 저임금 공공기관 임금격차 완화 방안 마련	재경부·관계부처	'26.12.

3. 도급 노동자 고용안정 강화

① 도급계약 기간 2년 이상 보장 [가이드라인]	관계부처 합동	'26.下
② 도급 노동자 고용승계 [가이드라인]	관계부처 합동	'26.下
③ 원도급사 독립성 보장 [가이드라인]	관계부처 합동	'26.下

4. 공공부문 하도급 제한 및 사전심사제 도입

① 하도급 원칙적 금지(제한) [가이드라인]	관계부처 합동	'26.下
② 하도급 사전심사제 운영 방안 마련 [가이드라인]	관계부처 합동	'26.下

5. 도급 개선방안 이행 등 관리

① 공공부문 적정 도급 관리 평가 기준 마련	관계부처 합동	'26.7
② 도급 관리 공공기관·지방공기업 등 경영평가 반영	재경부·행안부	'26.8~
③ 도급 개선방안 및 가이드라인 이행 여부 점검(반기별)	관계부처 합동	'26.下

참고 2

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세부 추진과제 및 일정

1. 노동가치·고용불안정성을 제대로 보상하는 공정한 보수 지급

① 1년 미만 기간제 공정수당 도입		
① ^{가칭}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마련	노동부, 관계부처	'26.5
② 공정수당 포함 정부예산 편성	기획처, 관계부처, 지자체	'26.9
③ 정부 관련 지침 반영 및 공정수당 시행	전체 공공부문	'27.1
② 공공부문 적정임금 지급 추진		
① 적정임금 예산 반영	기획처, 관계부처, 지자체	'26.9
② 적정임금 도입 지원	노동부, 행안부, 재경부, 교육부, 관계부처	'26.4~
③ 정부 관련 지침 반영 및 적정임금 도입	전체 공공부문	'27.1
③ 복지 3종·수당 등 처우개선 논의	공무직위원회·관계부처	'26.4~

2. 모범적 사용자로서 공정한 고용관행 확립

① 공정한 고용 관행 확행 및 사전심사제 내실화		
① 공정한 고용관행 확행	전체 공공부문	계속
① 사전심사제 지침 개정	노동부	26.5
② 사전심사제 운영 등을 경영평가에 반영	노동부, 재경부, 행안부	'26.8~
②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관리 강화	재경부, 행안부	'26.7
③ 초단시간 남용 방지	노동부, 재경부, 행안부, 전체 공공부문	'26.5

3. 처우개선의 지속성 담보

① 정기실태조사 실시	노동부, 공무직위원회, 관계부처	'27.3
②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개선		
① 비정규직 고용 관련 지표 마련	노동부	'26.6
② 경영평가, 자치단체 평가 등 개선	노동부, 재경부, 행안부	'26.8~
③ 비정규직 고용 심사위원회 구성	노동부	'27.1
③ 온라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상담센터 운영	노동부	'26.4
④ 공공부문 근로감독 실시	노동부	'26.3~